〈 사 업 방 법 서 별 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 새가정복지보험

2. 가입의 연령,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에 관한 사항

구 분	가입연령	보험기간	납입기간
새가정복지보험	15세 ~ 만기연령 70세	3년만기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	일시납 전기납
새가정복지보험 암사망특약			

3. 기타

가. 연체이자율

적립부분의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보험기간별로 아래와 같이한다.

① 3년만기 : 연체기간의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2.0%

② 5년, 7년, 10년만기 : 연체기간의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1.5

나. 선납보험료

1)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영수한다.

2) 제1항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당해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대체한다.

3) 당해 납입해당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보험료는 납입일로 부터 예정이율로 부리된 금액을 납입보험료에 가산한다.

다. 책임준비금의 구분계리

회사는 이 보험을 판매함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과 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대출금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량을 적정한 범위 이내에서 제한한다.

라. 새가정복지 보험료 증액특약에 관한 사항

1) 특약의 적용범위

① 동일 단체의 보험계약자가 20인 이상 일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동일 단체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장, 직제, 직종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분된 집단의 일부에 대하여는 회사가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2) 특약의 운용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직전년도 납입보험료의 30%범위 내로 증액할 수 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임금 인상율 또는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지원금액의 인상율의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전년도 납입보험료란 동일보험년도 중 납입된 총 납입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술 평균한 보험료를 말한다.